

장애인 보조기구 정책

2010. 11. 27.



힘이 되는 평생친구
보건복지부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목 차



I 현 황



II 장애인 보조기구 주요 문제점



III 보조기구 정책 추진 내용

I. 현 황

- 1.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· 이용 현황**
- 2. 보조기구 산업 현황**
- 3. 보조기구에 대한 품질관리 현황**
- 4. 시 · 청각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 교부 사업**

1.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· 이용 현황

보조기구 교부 현황

■ 복지부 4개 사업 포함, 노동부 2개 사업, 행정안전부, 국가보훈처
각 1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

● 지급대상 품목 확대 등에 따라 총사업 규모 꾸준히 증가

(893억원('06) → 1,087억원('07) → 1,019억원('08) → 1,409억원('09))

★ 금액 84%(1186.7억/1409.2억), 수혜자 89%(293,497명/329,089명)가 복지부 사업 대상



1.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· 이용 현황

부처별 교부 현황

부 처	보건복지부				노동부		보훈처	행안부
과	보험 급여과	요양 보험 제도과	기초 의료 보장과	장애인 자립 기반과	산 재	장애인 고용과	보훈 의료과	정보 문화과
대상	건강보험 가입자		의료급여 수급권자	기초 및 차상위층	산재보험 가입자	고용 사업주	국가유공 상이자	등록 장애인
지원 규모	342억	673억	161억	9억	56억	88억	48억	30억
품목수 (개수)	77	16	77	12	93	94	41	42

★ 이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수학교와 학급에 대하여 보조기구 교부

1.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· 이용 현황

보조기구 이용 현황

- 장애인의 44.2%,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81.1%가 보조 기구 보유
- 평균 구입 비용은 122만원, 연평균 유지 비용은 12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, 비용부담은 자부담에 의한 구입이 36.9%
- 특히, 보조기구에 대한 사후 서비스 만족도 저조

2. 보조기구 산업 현황

- 보조기구 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, 209개 업체중 10명 미만의 영세한 업체가 55.5%, 매출액 1억미만 업체 39.2%
- [의료기기인 보조기구] 제조 업체는 341개로 평균 생산금액은 약 5.5억 미만인 것으로 파악('10년, 식약청 의료기기과 조사)
- [의지 · 보조기] 시도 등록 업체 : 205개,
협회 등록 업체 : 201개 ('09년 조사)

3. 보조기구에 대한 품질관리 현황

관리법령에 따른 보조기구 분류

의료기기법에 의한 관리대상 품목	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대상 품목	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·보조기	기 타
▶ 전동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46개 품목	▶ 안전품질표시대상: 4개 품목 ▶ 자율안전확인: 2개품목	▶ 상지, 하지 등 88개 품목	▶ 193개 품목

3. 보조기구에 대한 품질관리 현황

의료기기로 분류된 보조기구

- 46개 품목에 대하여 1~3등급을 부여, 제품허가서 제출, 제품검사, 기술문서 심사를 하고 GMP를 통해 의료기기로 등록
 - 시판 후 조사, 재평가, 수시재평가 제도를 통해 사후 관리

의지 · 보조기로 분류된 보조기구

- [업소 개설] 의지 · 보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 · 보조기 기사를 두고 7일 내에 개설 사실을 시 · 군 · 구에 신고
- [의지 · 보조기사 의무화] 의지 · 보조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의지 · 보조기 기사 채용을 의무화

3. 보조기구에 대한 품질관리 현황

공산품으로 분류된 보조기구

- **[공산품자율안전확인제도]** 보행차, 보행보조차에 대한 제품 검사를 통해 품목 허가(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생활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수행)
- **[안전 · 품질 표시제도]**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제조자가 해당 품목의 안전 · 품질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 : 지팡이 등 4개 품목

3. 보조기구에 대한 품질관리 현황

품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처벌내용

관련 근거		법적 적용	심사 방법	사후 관리	행정처벌 규정
의료기기로서 관리 [의료기기법]		법정 강제	기술문서 제품검사 공장심사	정기검사, GMP, 재심사, 재평가, 추적관리	판매정지 허가취소 영업정지
의지·보조기로서 관리 [장애인복지법]		법정 강제	의지·보조기 기사에 의한 관리	의지·보조기 기사에 의 한 관리	업소폐쇄 과태료 벌금
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 법	자 율 안 전 확인	법정 강제	제품 검사	정기검사 無 시장감시 모니터요원 활용	인증취소 과태료부과
	안 전 · 품 질 표시제도	법정 강제	없음	정기검사 無 시장감시 모니터요원 활용	과태료부과
고령친화 우수용품 인증 [고령친화산업진흥법]		법정 임의	제품 검사	정기검사 無	인증취소



4. 시 · 청각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 교부 사업

-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사업 : 음성시계, 음향 신호기 리모콘,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7개 품목(전체 12개 품목)
- 건강보험 및 의료 급여 : 보청기, 의안, 흰지팡이 7개 품목
-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: 스크린 리더기, 독서 확대기 등
-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사업 : 점자타자기, 저시력

Ⅱ. 장애인 보조기구 주요 문제점

- 1. 고가장비 등 지원미흡에 대한 불만**
- 2. 보조기구의 사후 품질관리 미흡**
- 3. 허위청구, 부정수급, 중복수급 등 발생**

1. 고가장비 등 지원미흡에 대한 불만

- 전동 휠체어 등은 1,200만원 이상의 고가품이 판매되고 있으나, 건강보험에서 지급 기준액 제한(전동휠체어 209만원, 전동스쿠터 167만원)
- 지급받은 보조기구의 유지·수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

2. 보조기구의 사후 품질관리 미흡

-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조기구는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의료기기법을 통해 관리
- 보조기구 산업이 영세하여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, 사후서비스 등 극히 취약

3. 허위청구, 부정수급, 중복수급 등 발생

- 판매업자가 장애인 및 의료인과 공모하여 건강보험 · 의료급여 허위 · 부당청구 하는 사례 발생
- 여러 부서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복지급 등의 문제 발생

Ⅲ. 보조기구 정책 추진 내용

- 1. 실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**
- 2. 품질관리 및 수리, 사후관리 지원 강화**
- 3. 중복수급,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**
- 4. 시·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정책 방향**

1. 실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

- 보험 급여의 보장성 강화
- 지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품목 확대
- 보조기구 임대제 실시

2. 품질관리 및 수리, 사후관리 지원 강화

- 관리체계 강화
- 업소 · 품목 등록제 실시
-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
 - 국립재활원을 통하여 중앙 사례관리 시범센터 운영
 -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

3. 중복수급,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

■ 시스템 연계를 통한 중복지급 요인 제거

- **부처내 장애인 보조기구DB연계망 구축** [장애인자립기반과]
 - 『복지사업 평가·정비 T/F』의 결정에 따라 부처내 교부사업에 대하여 **행복e음과 연계 구축 합의** [복지정보과]
- ★ 부처간 연계는 행정안전부의 복지정보연계사업에서 추진

4. 시·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정책 방향

- 시각 장애인
- 청각 장애인



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~ ^^